#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 —

###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의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규정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분리 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이 불필요함.

#### □ 주요골자

-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추가
- ㅇ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명확화
- ㅇ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폐지
- ㅇ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 적용시한 폐지

## □ 참고사항

- ㅇ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9조
- 충청남도 세정과 11441(2005. 12. 12)호에 의거 군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되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의 등록시 감면혜택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혜택의 지속적 부여 등으로
-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고, 충청남도의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6호 제출년월일 : 2006. 3.29 제 출 자 : 예 산 군 수

####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규정 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 분리 과세 규정이 신설 되어 감면규정이 불필요함.

#### 2. 주요골자

-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추가
- ㅇ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명확화
- ㅇ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폐지
- ㅇ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 적용시한 폐지

####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 ㅇ 충청남도 세정과-11441(2005.12.12)호에 의거 군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예산군 조례 제276호

#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세감면조례"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명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을 "국가 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전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 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재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3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u>국가유공자 및 그</u> ①(생 략)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 <u>국가유공</u> 기 감면) ①(현행	•	구자동차에 대한 -
(생 략) 2(생 략)		<u> </u>	. – –	
	시 이하인 승용자동 년 7인승이상 10인승			하는 <u>승용자동차</u> 하인 <del>승용</del> 자동차
	<u>차(「자동차관리법」</u>			· 10인승 이하인
	<u>2000년 12월 31일</u> 차로 분류된 고급에			<u>동차관리법」의</u> 0년 12 월 31일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2 분류된 고급에
제외한다)_		<u>해당하는</u> 차를 제외		이에 준하는 자동
			<u>. –</u>	의하여 자동차의
				<u>동차에서 2006년</u> -자동차에 해당
				사(2005년 12월
			<u>!부터 승용</u> 것은 제외	용자동차로 분류 하다)
2.~4. (생 략)		2~4. (현행	과 같음)	<u> </u>
│ ③ (생 략)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7 제3조(장애인 소년	•	내한 감면)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2)	
· ·	<u>이하인 승용자동차</u> 승이상 10인승 이하			<u>하는 승용자동차</u> 하인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자동치	·관리법 의 규정에	나. 승차정원	! 7인승 이	상 10인승이하
의하여 2000년 12월	<u>  31일 이전에 승용</u> 	<u> </u>	동차(「자동	동차관리법」의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4 (생략) ② (생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 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본문 현행과같음)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현행과같음)「임대주택법」

현 	행 	개	정 	안
2·3 (생 략) 다 당 생략) 다 당 생략 이 다 당 생략 이 다 당 하 당 하 다 당 하 다 당 하 다 당 하 다 가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다 하 다 하 다 다 다 하 다 다 다 하 다 다 다 하 다	규정에 의한 정당한 무기간내에 임대여 무기간내에 임대여 가나 매각하는 경에 및 도시계획세를 대용하는 지기호 및 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 보이 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무원연금법 시설을 포함한 보이지 일을 모시계획 보이 되었다. 지원에 의한 도시계획 대한 감면) 이용에 관한 보이 구성에 의한 도시계획 대한 감면) 이용에 관한 보이 되었다. 지원으로 기계획 기준일 현기 의한 다시의 기준일 현기 의한 감면) 이용에 관한 보이 의한 도시계획 기준일 현기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의 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 	행과 같음   제12조/ 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현행	개 정 안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u>토지 및 지상</u>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화물터미널 및 창고용</u> 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u>토지·지상건축물·주택</u>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감면) ①